

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8]

허가 등의 수수료(제51조제1항 관련)

대 상	금 액
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	2만5천 원
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·재등록	2만5천 원
변경허가	1만5천 원
변경등록	1만5천 원
허가증 재발급	1만5천 원
등록증 재발급	1만5천 원